

#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8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이 설치한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11.07.15. 조례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정비 요청
- 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도모함.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우))
- 다. 보훈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입장료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1.12.31.~2022.1.20.(2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제1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4.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
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
16.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p> <p>1. <u>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p> <p>2.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u>감면할 수 있다.</u></p> <p>1.·2. (생략)</p> <p>3. <u>단순통행자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u></p> <p>4.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u>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u>의 노인</p> <p>5. <u>장애인 및 국가유공자</u></p> <p>6. (생략)</p> <p><u>&lt;신 설&gt;</u></p>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 ----- ----- -----.</p> <p>1. ----- -- <u>주소를 두고 있는</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u>면제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린카드 소지한 사람</u></p> <p>4. ----- ----- -----, <u>다자녀 가정</u></p> <p>5.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7. 「<u>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u></p>

<신 설>

법률」에 따른 한국소년사랑청  
소년단의 단원,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신 설>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 설>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신 설>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신 설>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 설>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설>

7. (생 략)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

16. (현행 제7호와 같음)

## 관 련 법 령 발 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  
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  
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  
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  
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  
다.[본조신설 2015. 12. 3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
연락처	(033) 330 - 2450